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안 제73조4)

소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함

다. 국외 선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액 조정(안 제3조)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라.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 정비(안 제11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이 법과 상이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함
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실화(안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1. ~ 6. 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월 300만원”을 “보수 중 비과세급여 범위”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군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하 이 조에서 “복무기간”이라 한다)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며, 역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때에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여 산입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

간에 추가로 12개월을 산입한다.

제7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제7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단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생략)	제3조(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2. ----- ----- ----- ----- ----- ----- ----- 보수 중 비과세급여 범위 ----- -- 제외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	① ----- ----- ----- ----- ----- -----

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 3. (생략)

④·⑤ (생략)

<신설>

----- 거쳐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4조의3(군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하 이 조에서 “복무기간”이라 한다)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며, 역에 따라 계산한다.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②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때에는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여 산입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추가로 12개월을 산입한다.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현황, 지역가입자의 소득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4